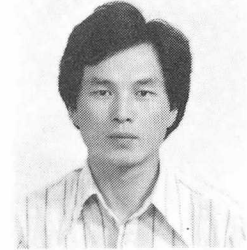


화재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채 수 주
(점검 2부 과장)

1. 머릿말

의무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실정과 실시 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취급종목이 있다.

이중에서도 화재보험은 보험선진국인 서독, 스위스를 비롯하여 덴마크, 포르투갈, 브라질 등 여러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의 역할이 손해발생시 보상이라는 고유의 경제적기능 이외에 위험관리를 통한 손해방지라는 예방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어 국가방재를 위한

보험의 재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무보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유럽지역의 각종 의무보험 실태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화재에 대한 의무보험 현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실시현황

유럽에서는 현재 공보험의 성격을 띤 여러 종류의 의무보험이 있는데 18개국에서 도표1과 같이 200여종이 시행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화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805년이다.

남부 독일의 영향을 받아 Aaugau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그 이후 다른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1800년대에 이미 17개주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상호기금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후 입법화되었고 계속 보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위스에는 자치적 성격의 26개주가 있는데 이중 22개주에서 의무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건물 및 동산이 의무보험 대상이며 건물은 22개주에서, 동산은 8개주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보험은 대부분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주화재보험기관(Cantonal Fire Insurance Institution)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하며, 몇몇주에서만 일반손해 보험회사도 의무보험에 참여하고 있다.

도표1. 유럽의 의무보험 실태

나 라	의 무 보 험 의 종 류	
서 독	"보세창고보험"등	22종
벨 기 에	"작업소등 재해대비 경영 책임보험"등	37종
덴 마 크	"산업재해보험"등	5종
프 랑 스	"교통용 육상 차량보험"등	66종
그 리 스	"자동차보험"	1종
아 일 란 드	"자동차보험"	1종
이 탈 리 아	"항공기운항 강제보험"등	10종
룩셈부르크	"호텔소유자의 제3자 책임보험"등	7종
네 덜 란 드	"석유탱커의 책임보험"등	5종
영 국	"공해책임보험"등	7종
오스트리아	"공인회계사등의 법적책임보험"등	6종
스 케 인	"공공주택 개발자 책임보험"등	9종
핀 란 드	"종업원의 단체 생명보험"등	8종
노 르 웨 이	"계약실행실 담당자 법적배상책임보험"등	3종
포르투갈	"수평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등	6종
스 웨 덴	"제3자 배상책임 자동차보험"등	2종
스 위 스	"화재보험"등	16종
터 키	"자동차보험"등	2종

자료 : 방화정보

도표2. 스위스의 의무보험 형태

부보대상	주	취급형태	취급기관	비 고
건 물	19개주	의무보험	주 화재보험기관	1개기관에서 독점
	3개주	"	일반보험회사	보험회사임의선택
	4개주	임의보험	"	부보여부 및 보험 회사 임의선택
동 산	2개주	의무보험	주 화재보험기관	1개기관에서독점
	1개주	"	주 화재보험기관 또는 일반보험회사	보험회사 임의선택
	5개주	"	일반보험회사	"
	18개주	임의보험	"	부보여부 및 보험 회사 임의선택

건물인 경우 19개주에서는 다른 회사와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각 주에 있는 주화재보험기관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3개주에서는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하며 계약자가 임의로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동산인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는 주가 8개주에 불과하여 의무보험이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 기준 의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562million SFr으로 스위스 전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화재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3. 실시방법

가. 가입대상 및 보험기관

의무보험이 실시되는 주에서도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이(동산이 의무보험 대상인 경우 동산 포함)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계약자의 청약과 동시에 보험이 개시되면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보험은 무기한 계속된다.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보통 착공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에 따라서는 지하층이 완공되거나 건물의 원형이 완성될 때 보험이 시작되기도 한다.

건물의 중·개축시에는 공사가 끝날 때 보험이 시작되고 건물이 존재하는 한 보험은 계속되는 것이다. 보험이 종결되는 경우는 1) 건물이 파괴될 때 2) 건물이 보험가입의무에서 해제되는 때 뿐이다.

나. 보험료 및 보험금액

보험요율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느 주에 있어

어도 일반보험회사 적용요율보다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험요율은 우리나라와 같이 협정요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화재보험요율과 의무보험요율과는 각각 다르고 의무보험요율은 각 주마다 상이한데 기본요율에 부가요율을 더해서 결정된다.

기본요율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부가요율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소화설비의 설치 상태에 따라 보험료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보험료를 거수하는 데는 은행지로제를 이용하며(년납) 보험에 대한 일반인식이 높아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보험금액은 몇개주를 제외하고는 신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건물상태가 아주 불량하거나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별도 산정하고 있다.

다. 담보범위

기본적으로 화재, 폭발, 비행물체추락, 폭풍, 홍수, 우박, 눈사태 등을 담보하고 있으며 지진, 소요, 테러에 의한 손해 등은 특약으로 담보되고 있다.

라. 손해보상

보험목적물에서 이재가 발생하면 관계보험기관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을 한다.

건물과 동산이 서로 다른 보험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하며, 보험금은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일부씩 지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주화재보험기관(Cantonal Fire Insurance Institution)

화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19개주(일반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3개주 제외)에 있는 보험취급기관으로서 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Zürich등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소속으로 어느 형태든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운영된다.

조직은 총무부등 일반관리부서 이외에 감정, 손사, 방재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큰 배

▼스위스 재보험 본부 전경



방재서비스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며 위험관리를 통한 부보물건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서 손해율을 감소시키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유 및 요율을 결정하고 있다.

6. 맺는말

스위스에서 의무보험제도가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는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민이 이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들고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므로 이윤이 필요없게 되어 자연적으로 보험요율이 낮게 된다.

또한 의무보험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받고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낮은 요율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직접적인 방재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국가방재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기여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의무보험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운영되지만 국민이 이것을 필요로 할 때 이 제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

른의 경우 근무인원이 약 65명 정도이다.

주요취급 업무는

- 1) 의무보험취급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액의 결정, 거수, 손해사정등 제반보험업무
 - 2) 보험요율의 제정시행(주마다 요율이 상이)
 - 3) 일정규모 이상의 부보물건에 대한 손해방지 활동
 - 4) 소방대, 소방경찰, 방화관계자에 대한 교육
 - 5) 손해경감을 위한 계몽, 홍보
 - 6) 건축허가시 방재에 관한 사항 심의처리 등이다.
- 수입보험료는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손해보상 55%, 방재보조비 20%, 사업비 10%, 세금 5%, 기타 10%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수입보험료의 20~30%를 국가방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각주에 있는 화재보험기관 상호간의 협조와 업무조정을 위하여 1903년 건물화재 보험협회(Association of Cantonal Building Insurers)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5. 방재활동

일반적으로 보험이 발달된 서구지역과 같이 스위스 도 예방활동은 보험과 관련된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 방재활동의 중심기관인 스위스방화협회(Swiss Fire Prevention-Service SFPS)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과 유사한 점이 많은 순수한 민간 차원의 방재전문 기관으로서 1944년 스위스 일반손해보험회사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1) 회원사에 대한 안전점검 2) 보험회사를 위한 기술서비스 3) 교육, 홍보 4) 조사, 연구 5) 기초시험등 방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보험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다.

또한 주화재보험기관에서도 방재엔지니어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보물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회사에서도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손해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화재는 계절없고 불행은 예고없다